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33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58209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33117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변론 종결 2021. 5. 13.

판결 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0. 2. 접수 제52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15. 접수 제228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3. 28. 접수 제12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3. 28. 접수 제12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1981.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B을 포함하여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 5, 6, 7, 8 부동산1) 2) 과 진주시 F과수원 1,305㎡, G 과수원 1,015㎡, 진주시 H 전 52㎡, I답 323㎡ 등 여러 부동산이 있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1, 4, 6, 7, 8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1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1. 31.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7. 27.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3, 5 부동산은 망인이 등기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5.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10.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부동산3) 에 관하여 2007.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다시 위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7. 10. 2.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2006. 10. 20.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 2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2013. 5. 1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3, 4,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각 2019.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9. 3.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 본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 자녀들 중 누군가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축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3. 26.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변호사 손양곤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에 관하여 원고가 2020. 2. 25. 공증인의 면전에서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공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20년 제331호)가 제출된 점, ③ 원고가 2017. 9. 6. 입원치료를 받던 L요양병원에서 노년치매와 관련하여 MMSE 14(대상자 중 하위 5% 미만의 인지기능), GDS 5(초기 치매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상태)로 평가되었는데, 위 검사는 치매의 선별검사로서 정밀 심리검사 없이 치매의 심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의사능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020. 4. 27. 시행한 간이신경상태검사상 19/30점으로 인지상태가 정상범위로 판단되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장애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치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M병원 의사 N의 소견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가 제기되었다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6, 7, 8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항의하자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은 착오로 누락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정신분열증(치매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정신능력과 인지기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원고를 데리고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와 사이에 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버렸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상속인 중 1인인 ○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거주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인데, 피고 B이 원고 몰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 무효이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2007. 10. 2.경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P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12. P정신건강의학과의원(구 Q정신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2. 27. 퇴원한 사실, 원고가 입원 중이던 2007. 10. 2. 큰아들(피고

B), 큰며느리, 딸(R)과 동반외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7, 8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P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7. 10. 2. 당시 정상적인 인식과 예지력으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미약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증여계약 합의해제 당시 정상적인 정신능력과 인지기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에 의해 선정된 전문심리위원 S는 당시 작성된 의사지시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일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07. 10. 2.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007. 11. 4. 간호기록 및 다른 의무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비록 야간에 주로 나타나는 환청,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있지만 입원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적절한 현실검증력과 상황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7. 10. 2. 당일 및 전후의 의무기록상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심리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환자의 의사능력이 입원 중 다른 기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 2007년 환자의 조현병 진단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당시 환자가 보였던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도 비교적 경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의무기록상 주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합의 시점에 환자의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을 손상시킬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환자 의무기록상 병동 생활 중에도 적절한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적 판단력을 보였고, 퇴원 후에도 수개월 이상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아 입원 당시 인지능력이 치매 전 단계 수준일 것으로 생각됨. 그에 따라 합의 시점에 의사능력이 손상될 수준의 인지기능 손상은 없었을 것을 생각됨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J협회 의료감정원은 "2007. 10. 2.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부족하고 경과기록지, 심리검사결과가 없어 원고의 증상에 대한 감정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정상적인 의사능력 유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간호기록을 통해 원고의 우울감 및 낮은 활력 정도가 추정되지만, 이러한 증상을 통해 조현병 범주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의사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저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 및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신축 이후 원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 1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0이 위 건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이 건축주로서 2006. 10. 4.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시공사(현장관리인)로서 2006. 10. 20.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0. 10. 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만

별지

- 1) 별지 목록 기재 7, 8 부동산은 2010. 11. 9.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서 분할되었음
- 2)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상속 당시 면적이 866㎡였으나, 2018. 1. 25. 분할되어 288㎡가 되었음
- 3) 별지 목록 기재 7, 8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위 부동산은 2010. 11. 9.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